

문서번호	BSKS-3-1-83
제정일자	2013.07.17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9

2013.07.17.제정 2016.04.01.개정 2022.04.15.개정 소관부서 : 사무처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.) 교내 에너지 사용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학본부,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(이하 "사용부서"라 한다.) 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에너지소비기기의 사용 및 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에너지소비기기"라 함은 업무 및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석유, 전기, 가스, 물 등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기(냉난방기, 전자제품, 조명 등)를 말한다.
- 2. "사용"이라 함은 에너지소비기기를 기기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
- 3. "운전"이라 함은 에너지소비기기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.
- 4. "사적 에너지소비기기"라 함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개인자격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에너지소비기기를 말한다.

제3조(대상 및 범위)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에너지소비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냉난방기기
- 2. 각종 조명기기
- 3. 전자제품
- 4. 기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기
- **제4조(냉난방 설정온도)** ① 냉난방기기의 운전에 따른 실내 냉난방 설정온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한다.
 - 1. 냉방 온도 : 26℃이상
 - 2. 난방 온도 : 20℃이하
 - ② 제1항의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무처는 본교 모든 냉난방기기의 설정온도 를 제한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의 냉난방 온도는 실내 코너에서 직선거리 50센티미터(cm) 이격된 곳의 실 바닥 위 1미터(m) 위치의 온도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.
- 제5조(냉난방기기의 사용기간 및 시간) ① 냉난방기기의 사용가능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한다.
 - 1. 냉방운전 가능기간 : (하절기) 6월 1일 ~ 9월 30일



문서번호	BSKS-3-1-83
제정일자	2013.07.17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9

- 2. 난방운전 가능기간 : (동절기) 11월 15일 ~ 익년 3월 31일
- ② 실별 냉난방기 사용가능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한다.
 - 1. 교육관련실(강의실, 세미나실, 실습실 등) 및 학생관련실(학회실, 동아리실 등) : 사용시간에만 운전가능하며, 자동제어를 통하여 자동 꺼짐 기능이 가능한 냉난방기기에 대하여는 매 2시간마다 자동 꺼짐이 되도록 설정하고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8시까지는 냉난방기 사용을 금한다. 다만, 야간 강좌동의 경우에는 오후11시부터 익일 오전9시까지 냉난방기 사용을 금한다.
 - 2. 연구관련실(교수연구실, 실험실 등): 사용시간에만 운전가능하며, 자동제어를 통하여 자동 꺼짐 기능이 가능한 냉난방기기에 대하여는 사무처가 정한 시간마다 자동 꺼짐 이 되도록 설정한다.
 - 3. 행정관련실(행정실, 학과사무실 등): 사용시간에만 운전가능하며, 자동제어를 통하여 자동 꺼짐 기능이 가능한 냉난방기기에 대하여는 사무처가 정한시간 마다 자동 꺼짐 이 되도록 설정한다.
 - 4. 기타실: 사용시간에만 운전가능하며 자동제어를 통하여 자동 꺼짐 기능이 가능한 냉난방기기에 대하여는 사무처가 정한 시간마다 자동 꺼짐이 되도록 설정한다.
-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 또는 그 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냉난방기 사용기간 및 시간을 별도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의 냉난방기 연장사용 신청서에 의거 사무처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내외의 중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(3일 이 내) 으로 냉난방기 사용기간 및 시간을 별도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 사무처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⑤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 사무처에서 설정하는 자동 꺼짐은 업무시간 이후 1회를 포함하여 1일 최소 2회 이상 설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조명) ① 실내조명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실내조명은 실사용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, 실내 인원이 20분 이상 퇴실 시에는 소등하여야 한다.
- 2. 실내 조도가 자연채광으로 충분할 경우에는 실내조명을 사용하지 아니한다.
- 3. 실내 복도조명은 자연 조도를 측정하여 적정 조도 이상 시 자동 소등한다.
- 4. 실내 및 복도 등의 적정조도는 사무처에서 정한다.
- ② 가로등 및 경관조명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가로등은 일몰 시 점등되고, 일출 시 소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처에서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몰, 일출시간 60분 전후로 점등 및 소등 시간을 조정할 수 있 다.
 - 2. 심야시간(자정에서 오전5시까지)에는 가로등을 격등 점등한다.
 - 3. 경관조명의 작동여부는 사용부서의 장이 결정하되 작동가능시간은 일몰 30분후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한다.
- ③ 체육시설에 대한 조명 사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체육시설에 대한 조명이용가능시간은 일몰 시각부터 오후10시까지로 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83
제정일자	2013.07.17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9

- 2. 체육시설에 대한 조명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실제 이용자가 점등하되, 일정시간 이후 자동소등 되도록 한다.
-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내외의 중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(3일 이내)으로 조명사용 시간을 별도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무처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제7조(온수 사용) ① 온수 사용이 가능한 건물에 대한 온수 공급기간은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샤워실에 대한 온수공급기간은 사무처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제8조(이동식 및 사적 에너지소비기기 사용금지) ① 본교에서 지급 또는 설치한 에너지소비기기를 제외한 에너지소비기기의 사용은 금지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 - 1. 국고 또는 기타의 공적 자금으로 에너지소비기기를 구입, 설치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적 에너지소비기기 사용신청서에 의거 사무처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.
 - 2.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적으로 에너지소비기기를 구입 사용하고자 별지 제2호 서식 의 사적 에너지소비기기 사용신청서에 의거 사무처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.
 - 3.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동식 냉난방기기를 사용하고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동식 냉난방기기 사용신청서에 의거 사무처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.
 - 4. 책상용 조명기기, 휴대용 기기의 충전기기 등으로 시간당 100와트(W)이내의 소비전력 기기로 실당 300와트(W) 이내인 경우.
 -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거 사용승인 받은 에너지소비기기의 사용가능기간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
 - ③ 제1항 제2호에 의거 사용되는 에너지소비기기에 대하여 에너지비용을 별도로 사용자가 납부할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가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제9조(책임과 권한) 에너지 사용부서와 사무처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사용부서의 장은 사용부서의 에너지사용규정 준수 여부를 연2회(제5조 1항의 하절기 와 동절기 냉난방기 사용가능 기간 내) 별지 제4호 서식의 에너지사용현황 점검표에 의거 점검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.
 - 2. 제1호에 의한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 야하며, 사용부서의 장 단독으로 시정이 곤란할 경우 사무처에 이를 통보한다.
 - 3. 사무처는 연1회 제1호 내지 제3호의 이행여부를 감독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한다.
 - 4. 사무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로 사용부서의 본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.
 - 5. 제4호 내지 제5호에 의거 본 규정을 위반한 것이 발견된 사용자 및 사용부서에 대하여는 위반일 이후 시정조치여부를 재조사 하여야 한다.
 - 6. 중앙냉난방기 운전에 대한 관리책임은 사무처에 있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83
제정일자	2013.07.17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4/9

제10조(에너지소비기기 사용제한 등) ① 사무처에서는 정기 또는 수시 조사 등에 의하여 에너지 소비기기의 이용에 있어 사용자 또는 사용부서에서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, 다음 각 호와 같이 에너지소비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- 1. 1회 위반 : 주의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에너지사용 위반 사유서 제출
- 2. 2회 위반: 3일간 해당 에너지소비기기 사용금지
- 3. 3회 위반 : 5일간 해당 에너지소비기기 사용금지
- ② 제1항에 의한 에너지 사용 위반 회수는 위반 일 이전 1년간의 위반 회수의 누적 값으로 한다.
- ③ 허가받지 않은 사적 에너지소비기기 사용이 발견된 경우 사무처는 즉시 해당 기기의 철거를 요구하여야 하며,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기 또는 실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.

제11조(에너지 사용 데이터 관리) 에너지 사용 데이터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사무처는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, 분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.
- 2. 에너지 사용부서 및 각 실습실 지정 관리담당자는 사무처에서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요청 시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2조(에너지사용관리에 대한 특례) 도서관, 특강 및 기타 사무처장의 허가를 득한 사용부서는 기관장의 책임 하에 본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83
제정일자	2013.07.17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5/9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냉난방기 연장사용 신청서

계	팀장	처장

구 분	내	<u>a</u> 0	허 가 조 건
사용 실명/ 실고유번호			1. 연장사용허가 기간 내에도 연장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연장사용을 중지한다.
연장사용기간 또는 시간	20 ~ 시부터~	20	2. 연장사용사유와 다른 목적으로 연장 사용할 수 없다.
연장 사용 사유			3. 연장 사용실의 관리담당부서장은 연장 사용 사유에 합당하게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관리/감독하여야 하며, 연장사 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위와 같이 냉난방기 연장 사용을 신청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. . .

신 청 자 소속:

직 책:

성 명: (인)

신청 부서장 성 명: (인)



문서번호	BSKS-3-1-83
제정일자	2013.07.17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6/9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사적 에너지소비기기 사용신청서

계	팀장	처장

구 분	내 용	허 가 조 건
사용 실명/ 실고유번호		1. 사적에너지소비기기 사용자는 해당 기기 의 부적절한 사용 및 관리 부주의로 발
사용기간	20 ~ 20	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, 이로 인하여
사적 에너지소비기기 사용 사유 및 용도		학교시설 등에 손상을 줄 경우 원상복구 또는 현금 배상하여야 한다. 2. 사적 에너지소비기기 사용자의 소속 부서 장은 해당기기의 적절한 사용여부를 관
사적 에너지소비기기 사양	제 품 명 : 제품번호 : 사용에너지 : 전기, 가스, 수도, 기타 에너지소비량 :	리 감독하여야 한다. 3. 학교는 사적에너지소비기기 사용에 따른에너지비용을 기기사용자에게 부과할 수있다.

위와 같이 사적 에너지소비기기 사용을 신청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. . .

신 청 자 소 속:

직 책:

성 명: (인)

신청 부서장 성 명: (인)



문서번호	BSKS-3-1-83
제정일자	2013.07.17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7/9

【별지 제3호 서식】

이동식 냉난방기기 사용신청서

계	팀장	처장

(인)

(인)

구 분	내 용	허 가 조 건		
사용 실명/ 실고유번호		1. 이동식 냉난방기기의 사용자는 해당		
사용기간	20 ~ 20	기기의 부적절한 사용 및 관리 부주 의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,		
이동식 냉난방기기 사용 사유		이로 인하여 학교시설 등에 손상을 줄 경우 원상복구 또는 현금 배상하여 한다. 2. 이동식 냉난방기기 사용자의 소속 부		
이동식 냉난방기기 사양	제 품 명 : 제품번호 : 사용에너지 : 전기, 가스, 수도, 기타 에너지소비량 :	서장은 해당기기의 적절한 사용여부를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, 관리감독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.		
위와 같이 이동식 냉난방기기 사용을 신청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	20			

신 청 자 소속:

신청 부서장 성 명:

직 책:

성 명:

Yes! KS 부산경상대학교 BUSAN KYUNGSANG COLLEGE



문서번호	BSKS-3-1-83
제정일자	2013.07.17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8/9

【별지 제4호 서식】

에너지사용현황 점검표

건 물 명		점검일자	
점 검 자		확 인 자	
실 명	에너지사용규정준수여부	에너지사용기기 상태 (콘트롤러 정상작동 등)	비고
	준수/위반	양호/불량	



문서번호	BSKS-3-1-83
제정일자	2013.07.17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9/9

【별지 제5호 서식】

위반 사유서

[[에너지사용규정 위반사유] 	
	\Box

소 속: 직 위: 성 명: